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등 신설〉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44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사자에 대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70조의2 신설)	3
2.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안 제70조의3 신설)	11
※ 참고자료	16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검토의견	16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토의견	17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토의견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6.

다.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택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자에 대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벌칙을 규정(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70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함(안 제7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2. (생략)

<신설>

3. ~ 9.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

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의 정보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벌칙) ① 사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위가 공적 사안

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당사

자가 생전(生前)에 중요한 사회

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

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

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

람으로 사후(死後)에도 역사적

제70조의2(벌칙) (생략)	· 사회적 평가와 연구가 지속되는 인물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3(벌칙) (현행 제70조의2와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서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¹⁾.

1) 참고로, 현행법상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음.

법률조항	종류	형량	기타
형법 제307조제2항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제1항(신설)	사자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역사적 인물’ 제외

-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허위 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유통을 금지하여 피해자 유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보가 반복·재생산됨에 따라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²⁾.
- 또한, 형법 규정은 매체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도 포섭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범주에 사자 명예훼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통 차단 of 근거를 보다 직접 구성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추가로 별도 규정을 두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공론장 축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 그 취지에 공감함.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역사적 인물’ 내지는 ‘공적 사안’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표현의

2)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2015헌바438, 2021. 3. 25.)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이 형법 제308조에 비해 행위태양과 불법이 가중되어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여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임.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법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국민들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됨.³⁾⁴⁾
-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벌칙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역사적 인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적용 단계에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⁵⁾. 이로 인해 언론·시민과 같은 법의 수범자는 ‘역사적 인물’ 내지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신하기 어려움.
- 또한 플랫폼의 입장에서도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삭제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벌칙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할 유인이 발생함. 즉 자기검열 및 과잉삭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의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적어도 몇 가지 예시를 각 호⁶⁾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대강의 예

3) 원문 : This concept of chilling speech refers to the idea that even though individuals might want to engage in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a law that is vague, overbroad, or creates significant barriers to speech could cause them to curtail their expression.

4) Freedom of Speech :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9.13

5) 특히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이 사망한 경우, 이들을 둘러싼 비판적 표현이 어느 범위까지 ‘공적 사안에 관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으로 인정될지 불분명함.

6) 다음과 같은 입법례를 상정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이란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록원 등 공적 기록물에 의해 공적 업적·행적이 공적으로 정리된 사람

2. 사망 후 5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그 생전의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학술·언론·공적

추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의 실효적인 방법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도 있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사자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는 단순히 그러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 없이 있는 그대로 믿고 유포하는 콘텐츠 이용자 또한 책임을 짐.
- 따라서 단순히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접근도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형사처벌 위주의 입법보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셋째, 위 입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 제308조로도 처벌이 가능하긴 하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⁷⁾이 적용될

기록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람

수 없으므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사실을 유통시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미 유통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로 인해, 재난·참사 피해자 등 일반 사자에 대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가중 처벌·몰수·추징 등의 수단으로 강화되는 반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적으로 형법 제308조 수준의 규율에 머무는 ‘규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입법 정책상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자에 대한 거짓사실 유포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 사자에 대한 거짓사실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처벌조항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 사자 명예훼손죄’를 형법상 ‘일반 사자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자 명예훼손의 예외조항이 추상적이고 사후적인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보통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 플랫폼의 자체 신고·차단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및 임시조치 제도

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가 사자의 의사를 대표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해당 정보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고, 형법과의 관계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사자에 대한 인격권과 관련된 논란, 형사처벌 외 다른 대안의 부족 등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안 제70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거짓사실 명예훼손죄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함(안 제7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0조제2항,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2호----- ----- ----- ----- ----- ----- ----- -----.

다. 검토사항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각각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⁸⁾되어 있음.
-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90%가 사이버랙카가 유명한 자살 사건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⁹⁾하는 등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사이버랙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해달라는 국민 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음.
- 개정안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유포행위도 제75조의2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행위로 취득한

8)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9) 최승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사이버랙카, 유명한 자살 사건에 영향’”, 한국기자협회, 2024.02.28.,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341&utm>

유튜브 광고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¹⁰⁾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지은 자가 이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사자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플랫폼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범죄수익의 특징이 어려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익은 광고 단가, 시청자 위치, 추천 알고리즘, 채널 전체 트래픽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됨.
- 특히 특정 영상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채널 전체 수익 중 어느 부분이 직접적으로 그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인지 분쟁의 여지가 있음.
- 둘째, 기존의 법률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의 효과성 및 부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10) 의안번호 2215443, 2026.7.7. 시행 예정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¹²⁾.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을 규정한 종전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¹³⁾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을 것이라고 서술된 바 있으며¹⁴⁾, 위 개정안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¹⁵⁾에 포함되어 공포된 바 있음.
- 그런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효과성 및 부작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자’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12)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3년)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 모두 ‘중대범죄’에 포함됨.

13) 의안번호 제2202372호, 제2202475호, 제2202842호

- 14) 다만, 「형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개별법상 별칙으로 규정하여야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15) 의안번호 2215443, 2026.7.7. 시행 예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익창출을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하는 상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입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하여 배액 손해배상, 과징금, 형벌, 몰수·추징 등의 중복적인 제재가 적정한 수준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28

※ 참고자료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검토의견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사이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역시 ‘비방의 목적’, ‘거짓의 사실의 적시’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형법」상 ‘일반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재난 및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토의견

□ (안 제70조의2 제3항) 사자 명예훼손의 예외조항이 추상적이고 사후적인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개정안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면서, 역사적 인물을 “당사자가 생전에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사후에도 역사적 평가와 연구가 지속되는 인물”로 정의함.
-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추상적이고 사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과의 정합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 사후에도 역사적/사회적 평가와 연구가 지속되는 인물 등의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개념은 사후의 평가나 연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개념으로 이용자와 플랫폼이 예측하기 어려움.
-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그 예외/위법성 조각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누가 그 의사를 대표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규정은 방미통위/방미통심위가 삭제, 접속차단 명령 또는 시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게시물 삭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규제리스크에 노출됨.

- 사자 명예훼손이 불법정보로 명시되면 유족, 친족,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사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됨.
- 개정안 상 사자에 관해 누가 그 의사를 대표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유족은 삭제를 요구하고, 다른 유족 또는 단체는 역사적 자료를 이유로 유지를 요구하는 등 상반된 요구가 가능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짐.

□ 해당 정보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불법정보 해당여부 판단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로 현행법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법정보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음.
- 사자 명예훼손이 불법정보로 규정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통방지를 하려면 게시물이 특정 망인을 지칭하는지, 사망 사실이나 사실관계의 진실성, 비방목적 존재 여부 및 예외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기계적 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임.
- 결과적으로 이는 과잉차단과 자기검열로 귀결 될 수 있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발생하며, 사업자의 규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3. 한국인터넷자율기구 검토의견

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사자(死者)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역사적 사실 및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 개정안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또한 거짓 사실 적시만이 구성요건에 한정되지만, 이는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위축시키고 비판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나. 법적 안정성 및 중복 규제 논란

형법에 이미 사자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등의 충돌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다. 사자의 명예 대상화 문제

사자는 법적으로 인격권을 상실하므로 명예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법리적 관점에서, 사자를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라. 형사처벌 만능주의 비판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고의 해결책은 아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방안 강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마. 결론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물,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자 및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려는 시도로 보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 △형법과의 관계에서 이중처벌 논란 △사자에 대한 인격권과 관련된 논란 △형사처벌 외 다른 대안의 부족 등 논란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함.